

부속서 I-가
한국의 유보목록

주해

1. 이 부속서의 당사국의 유보목록은 제8.7조(비합치 조치) 및 제11.13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그 당사국의 기존의 조치를 규정한다.
 - 가. 제8.3조(내국민 대우) 또는 제11.4조(내국민 대우)
 - 나. 제8.4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11.5조(최혜국 대우)
 - 다. 제8.6조(현지주재)
 - 라. 제11.10조(이행요건)
 - 마. 제11.11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또는
 - 바. 제8.5조(시장접근)
2. 각 유보항목은 다음 요소를 규정한다.
 - 가. **분야**는 유보된 분야를 지칭한다.
 - 나. **관련의무**는 제3항에 규정된 대로, 제8.7조(비합치 조치) 및 제11.13조(비합치 조치) 제1항가호에 따라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의 비합치 측면에 적용되지 않는 제1항에서 언급된 조항(들)을 명시한다.
 - 다. 정부수준¹은 유보된 조치(들)를 유지하는 정부수준을 나타낸다.

¹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경우, 그 조치는 중앙정부 수준에서 유지되는 것이다.

라. **조치**²는 유보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적시한다. **조치** 요소에서 인용된 조치는

- 1) 이 협정의 발효일에 개정, 지속 또는 개신된 대로의 조치를 말한다. 그리고
- 2) 그 조치의 권한에 따라 그리고 이에 합치되게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하위조치를 포함한다. 그리고

마. **유보내용**은 이 협정 발효일에 자유화에 대한 약속이 있다면 이를, 그리고 유보된 조치의 잔존 비합치 측면을 규정한다.

3. 유보항목의 해석에서, 그 유보항목의 모든 요소가 고려된다. 유보항목은 유보가 이루어진 관련 조항에 비추어 해석된다.

가. 조치 요소가 **유보내용** 요소상의 자유화 약속에 의하여 한정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한정된 조치 요소가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 그리고

나. 조치 요소가 그렇게 한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치 요소와 종합적으로 고려된 그 밖의 요소 간의 불일치가 실질적이고 중대하여 조치 요소가 우선한다고 결론내리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가 아니면, 조치 요소가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 그렇게 결론내리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불일치의 한도에서 그 밖의 요소가 우선한다.

4. 제8.7조(비합치 조치)제1항가호 및 제11.13조(비합치 조치)제1항가호에 따라, 그리고 제8.7조(비합치 조치)제1항다호 및 제11.13조(비합치 조치)제1항다호를 조건으로, 유보항목의 **관련의무** 요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항들은 그 유보항목의 **조치** 요소에 적시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의 비합치 측면에 적용되지 않는다.

²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의 경우, 조치가 운영되거나 시행되는 정부수준의 변경은 그 자체로는 제8.7조제1항 및 제11.13조제1항에 언급된 의무에 대하여 그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5. 당사국이 자국의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서비스 제공자가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자국 영역의 거주자일 것을 요구하는 조치를 유지하는 경우, 제8.3조(내국민 대우), 제8.4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8.6조(현지주재)에 대하여 취하여진 그 조치에 대한 유보 항목은 그 조치의 한도에서 제11.4조(내국민 대우), 제11.5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11.10조(이행요건)에 대한 유보 항목으로 작용한다.
6. 한국의 경우, 외국인이란 외국 국민 또는 다른 나라의 법에 따라 조직된 기업을 말한다.
7.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8.6조(현지주재)와 제8.3조(내국민 대우)는 별개의 규율이며 제8.6조(현지주재)와만 불합치하는 조치는 제8.3조(내국민 대우)에 대하여 유보될 필요가 없다.
8.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업인의 일시입국 및 체류에 적용되는 구체적 약속은 부속서 9-가(구체적 약속)에 규정된다.

1. 분야	건설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8.6조)
조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제10조(법률 제19591호, 2023. 8. 8.)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대통령령 제35228호, 2025. 1. 2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국토교통부령 제1395호, 2024. 10. 16.)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법률 제20483호, 2024. 10. 22.)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제5조(법률 제20157호, 2024. 1. 30.)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의 별표 1(대통령령 제35382호, 2025. 3. 1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행정안전부령 제558호, 2025. 5. 15.)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한국에서 건설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그러한 서비스와 관련된 최초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2. 분야 건설기계 및 장비 관련 리스 · 대여 · 정비 · 수리 · 판매 및 폐기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8.6조)

조치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법률 제19365호, 2023. 4. 18.)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5조의2(대통령령 제35501호, 2025. 5.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부터 제63조까지,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국토교통부령 제1488호, 2025. 5. 14.)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건설기계 및 장비와 관련된 리스 · 대여 · 정비 · 수리 · 판매 및 폐기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3. 분야 운송서비스 – 자동차 정비 · 수리 · 판매 · 폐기 및 검사서비스,
자동차등록번호판교부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8.5조)
현지주재(제8.6조)

조치 자동차관리법 제20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53조(법률 제20391호, 2024. 3. 19.)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3조, 제87조 및 제
111조(국토교통부령 제1484호, 2025. 4. 28.)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국토교통부령
제1417호, 2024. 12. 17., 환경부령 제1136호, 2024. 12. 17.)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자동차관리서비스(중고차 판매 · 정비 · 수리 및 폐기 서비스를
포함한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하고,
경우에 맞게,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
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되어 자동차검사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로 지정되어 등록번호판 제작 · 교부
및 봉인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4. 분야

유통서비스 – 담배 및 주류의 도·소매 유통

관련의무

시장접근(제8.5조)

현지주재(제8.6조)

조치

담배사업법 제12조, 제13조 및 제16조(법률 제17142호, 2020. 3. 31.)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대통령령 제34258호, 2024. 2. 27.)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제7조 및 제7조의3(기획재정부령 제1062호, 2024. 3. 29.)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법률 제20249호, 2024. 2. 13.)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대통령령 제35364호, 2025. 2. 28.)

국세청 고시 제2024-41호(2025. 1. 1.)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담배 도매(수입 포함) 또는 소매유통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지정된 담배소매인만이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할 수 있다. 우편 또는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금지된다.

담배소매인의 영업소 간 거리는 최소한 50미터를 유지해야 한다.

주류 도매 유통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에 사업장을 설치하고 관련 세무서장으로부터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화 또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주류 판매는 금지된다.

5.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4조)

조치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법률 제19438호, 2023. 6. 13.)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5조(대통령령 제34936호,
2024.10.8)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별표1 및 별표2(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48호, 2024. 9. 19.)

유보내용

외국인은 1) 벼 또는 보리 재배업에 종사하는 기업에는 투자할 수 있으며, 2) 육우사육업에 종사하는 기업 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할 수 없다.

6. 분야 사업서비스 – 안경사(안경사 및 검안)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8.5조)

현지주재(제8.6조)

조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법률 제19817호, 2023. 10. 3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5조(보건복지부령 제1072호, 2024. 11. 28.)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안경사(안경사 또는 검안사) 면허를 받은 자연인으로서 한국에 사무소를 설치한 인만이 안경사 또는 검안 영업에 종사할 수 있다.

안경사(안경사 또는 검안사) 1인은 1개의 영업소만을 설치할 수 있다.

7. 분야

도·소매 유통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8.6조)

현지주재(제8.6조)

조치

약사법 제42조 및 제45조(법률 제17208호, 2020. 4. 7.)

약사법 시행령 제31조의2(대통령령 제34943호, 2024. 10. 16.)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6조(대통령령 제32089호, 2021. 10. 19.)

한약재 수급관리 규정 제4조 및 제12조(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39호, 2021. 9. 7.)

의료기기법 제15조(법률 제20888호, 2025. 4.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9조(총리령 제2029호, 2025. 4.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법률 제20138호, 2024. 1. 2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제5조(총리령 제2027, 2025. 3. 19.)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37조(법률 제20138호, 2024. 1. 2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24조(대통령령 제35173호, 2024. 12. 3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총리령 제2008호, 2025. 1. 10.)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 제22조 및 제24조(법률 제20532호, 2024. 10. 2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대통령령 제34665호, 2024. 7.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10(총리령 제1934호, 2024. 1. 1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 및 제15조(법률 제19621호, 2024. 2. 6.)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조(대통령령 제34664호,

2024. 7. 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총리령 제1992호, 2024. 11. 15.)

식품 · 의약품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법률 제19621호, 2023. 8. 8.)

식품 · 의약품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총리령 제2025호, 2025. 2. 2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6조의2(법률 제20507호, 2024. 10. 22.)

화장품법 제3조(법률 제20901호, 2025. 4. 1.)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4조(총리령 제2012호, 2025. 2. 7.)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도매업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이 다음과 관련된 서비스 공급을 위한 수입업 면허를 얻기 위해서는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가. 의약품 및 관련 물품

나. 의료기기, 또는

다. 기능성 식품(식품보조제 포함)

다음의 서비스를 공급하려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가. 식품과 식품첨가물의 운반 · 판매 및 보존(냉장 및 냉동저장)

나. 식품공급 서비스

다. 식품검사 서비스

라. 마약류 도·소매 유통서비스, 또는

마. 화장품(기능성 화장품 포함) 공급 서비스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입된 지정 한약재의 도매유통에 대한 수급 조절을 한다.

특정 주류 판매업소와 마약류 도·소매 유통업은 관계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8. 분야

의약품 소매유통

관련의무

시장접근(제8.5조)

현지주재(제8.6조)

조치

약사법 제20조 및 제21조(법률 제17208호, 2020. 4. 7.)

약사법 시행령 제22조의2(대통령령 제34943호, 2024. 10. 16.)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의약품 소매유통서비스(한약재 유통 포함)를 공급하는 인은 한
국 내에 약국을 설치해야 한다.

그 인은 약국은 1개소만 설치할 수 있고, 회사의 형태로 설립할
수 없다.

9. 분야

운송서비스 – 철도운송 및 부수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3조)

시장접근(제8.5조)

조치

철도사업법 제5조, 제6조, 제12조 및 제13조(법률 제20702호, 025. 1. 21.)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법률 제15460호, 2018. 3. 1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법률 제20177호, 2024. 1. 30.)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20조, 제26조 및 제38조(법률 제18693호, 2022. 1. 4.)

국가철도공단법 제7조(법률 제20123호, 2024. 1. 23.)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현행 규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법인만이 철도운송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고 개괄적으로 명시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 국민이 설립한 한국 국적의 법인(한국 국적의 주주가 100퍼센트의 주식을 소유한 법인)만이 2005년 6월 30일 또는 그 전에 건설된 철도 노선의 철도운송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법인만이 2005년 7월 1일 또는 그 후에 건설된 철도 노선의 철도운송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그러한 면허는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른다.

철도운송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인이 합작투자 계약 또는 운송 관련 협정을 체결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그 인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관련 인가를 받아야 한다.

중앙 또는 지방정부나 국가철도공단만이 철도건설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고 정부소유 철도시설(고속철도 포함)을 유지 및 보

수할 수 있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은 철도건설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10. 분야

운송서비스 – 국제해상화물운송 및 해상운송 보조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3조)

시장접근(제8.5조)

현지주재(제8.6조)

조치

해운법 제24조 및 제33조(법률 제20951호, 2025. 4. 22.)

해운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9조, 제22조 및 제23조(해양수산부령 제652호, 2024. 2. 5.)

도선법 제6조(법률 제20525호, 2022. 10. 22.)

선박투자회사법 제3조 및 제31조(법률 제17112호, 2020. 3. 24.)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국제해상화물운송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상법」에 규정된 대로 한국에 회사로 설립되어야 한다. 선박투자회사는 한국에 주식회사로 설립되어야 한다.

해운중개서비스, 해상대리업서비스와 선박 정비 및 수리 서비스에 종사하는 인은 한국 「상법」에 규정된 회사여야 하고 「해운법」에 따라 등록되어야 한다.

한국 국민만이 해상도선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11. 분야

운송서비스 – 항공 운송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4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11조)

조치

항공안전법 제7조 및 제10조(법률 제18789호, 2022. 1. 18.)

항공사업법 제7조, 제8조, 제9조 및 제10조(법률 제19688호, 2023. 8. 16.)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제8조의2 및 제12조(국토교통부령 제1342호, 2024. 6. 4.)

유보내용

투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국내운송의 정기항공운송서비스나 부정기항공운송서비스를 공급할 수 없고, 대한민국 국적의 항공사로서 국제항공운송서비스를 공급할 수 없다.

가. 외국 국민

나.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

다. 외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업

라. 가호부터 다호까지에 해당하는 인이 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 기업, 또는

마. 외국 국민이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최고선임임원)이거나 외국 국민이 임원의 절반 이상인,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항공기를 소유한 자 또는 임차하여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당해 항공기를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항공기의 등록은 가호 내지 마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

12. 분야

쿠리어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8.5조)

현지주재(제8.6조)

조치

항공사업법 제52조(법률 제19688호, 2023. 8. 16.)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국토교통부령 제1342호, 2024. 6.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24조 및 제29조(법률 제19988호, 2024. 1. 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 제34조 및 제41조의2(국토교통부령 제1487호, 2025. 4. 29.)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우편법 시행령」 제3조에 명시된 상업서류송달서비스를 포함한 국제 쿠리어 서비스를 공급하고자 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화물운송업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국내 쿠리어 서비스 공급자는 해당 지역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한 면허는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른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내 쿠리어 서비스 공급자를 인수하려는 인은 피인수자가 보유한 면허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조건 하에 영업을 영위하는 한, 신규 화물운송업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다.

13. 분야

통신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3조 및 제11.4조)

시장접근(제8.5조)

현지주재(제8.6조)

조치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87조(법률 제20677호, 2025. 1. 21.)

전기통신사업법 부칙 제4조(법률 제5385호, 1997. 8. 28.)

전파법 제13조 및 제20조(법률 제20481호, 2024. 10. 22.)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기간통신사업 등록 또는 별정통신사업 등록은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만 허용된다.

기간통신사업 등록은 외국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국인이 모두가 합하여 그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9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부여되거나 그 법인에 의하여 보유되지 않는다.

외국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국인 모두가 합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9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못한다. 이에 더하여, KT에 있어 외국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국인은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다만, 그 외국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국인이 KT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퍼센트 미만을 보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외국정부 또는 그 대표자, 또는 외국인은 무선국 허가를 취득하거나 보유할 수 없다.

외국인은 한국에 등록된 기간통신서비스 사업자와의 상업적 약

정을 통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으로 국경 간 기간통신서비스를 공급할 수 없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가. 의제외국인이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6호가목에 따른 “특수관계인” 포함)이 최대주주이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5퍼센트 이상을 그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다만, 그 법인이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퍼센트 미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기간통신사업자란 전송설비를 소유하고, 기간통신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급자를 말한다.

다. 별정통신사업자란 전송설비를 소유하지 않고(그러나 스위치, 라우터 또는 멀티플렉서는 소유할 수 있다) 등록된 기간통신사업자의 전송설비를 통하여 기간통신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급자를 말한다. 그리고

라.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3호(법률 제16019호, 2018. 12. 24.)의 규정에 따라, 전송설비란 송신 지점과 수신 지점을 연결하는 유선 또는 무선 전송설비(회선설비 포함)를 말한다.

14. 분야

부동산 중개 및 감정평가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8.6조)

조치

공인중개사법 제9조(법률 제19841호, 2023. 12. 26.)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대통령령 제34401호, 2024. 4. 9.)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4조(국토교통부령 제1349호, 2024. 7.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 및 제29조(법률 제19403호, 2023. 5. 9.)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1조 및 제25조(대통령령 제34921호, 2024. 9. 26.)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20조(국토교통부령 제1390호, 2024. 9. 26.)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부동산 중개 또는 부동산 감정평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15. 분야

의료기기 관련 소매·리스·임대 및 수리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8.6조)

조치

의료기기법 제16조 및 제17조(법률 제20888호, 2025. 4.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 및 제37조(보건복지부령 제2029
호, 2025. 4. 1.)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의료기기와 관련된 소매·리스·임대 또는 수리 서비스를 공급
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16. 분야

대여 서비스 – 자동차

관련의무

현지주재(제8.6조)

조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및 제29조(법률 제20175호, 2024. 1. 3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0조, 제61조, 제62조 및 제64조(국토교통부령 제1430호, 2024. 12. 26.)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자동차대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17. 분야

과학조사서비스와 해도제작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3조 및 제11.4조)

조치

해양과학조사법 제6조, 제7조 및 제8조(법률 제17750호, 2020. 12. 22.)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5조(법률 제15429호, 2018. 3. 13.)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의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양과학 조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한국 기업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사전에 허가 또는 동의를 획득해야 한다. 이에 비하여 한국 국민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지 않거나 지배하지 않는 한국 기업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된다.

18. 분야

전문직 서비스 – 법률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8.5조)

현지주재(제8.6조)

조치

변호사법 제4조, 제7조, 제21조, 제21조의2, 제34조, 제45조,

제58조의6, 제58조의22 및 제109조(법률 제17828호, 2021.

1. 5.)

법무사법 제2조, 제3조 및 제14조(법률 제19841호, 2023. 12. 26.)

공증인법 제10조, 제16조 및 제17조(법률 제15150호, 2017. 12. 12.)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만이 법률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변호사만이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 형태의 법적 실체를 설치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인은 이러한 유형의 어떠한 법적 실체에도 투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한국에서 개업하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는 그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개업하는 지방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공증인은 그 공증인이 개업하는 지방검찰청의 관할구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이 유보항목은 부속서 II의 유보목록 중 법률서비스 – 외국법자문사 유보항목에서의 약속을 조건으로 한다.

20. 분야

전문직 서비스 – 노무 자문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8.5조)

현지주재(제8.6조)

조치

공인노무사법 제5조, 제6조, 제7조의2, 제7조의3 및 제7조의4
(법률 제18923호, 2022. 6. 10.)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19조의2(대통령령 제34921호, 2024. 9. 26.)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0조의2(고용노동부령 제375호, 2022. 12. 30.)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공인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공인노무사만이 노무 자문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노무 자문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노무 자문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은 2인 이상(설립자인 자연인 포함)의 공인노무사로 구성되어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1. 분야

전문직 서비스 – 변리사

관련의무

시장접근(제8.5조)

현지주재(제8.6조)

조치

변리사법 제3조, 제5조, 제6조의2, 제6조의3 및 제6조의12(법
률 제19165호, 2023. 1. 3.)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변리사 서비스는 한국 특허청에 등록된 변리사만이 공급할 수
있다.

한국 변리사만이 개인사무소,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을
설립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 변리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인은 이러한 형태의 법적 실체에 투자할 수 없다.

변리사 1인은 1개의 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다.

21. 분야

전문직 서비스 – 회계 및 감사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8.5조)

현지주재(제8.6조)

조치

공인회계사법 제2조, 제7조, 제12조, 제18조 및 제23조(법률 제20055호, 2024. 1. 16.)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9조(법률 제20896호, 2025. 4. 1.)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한국에 설립한 개인사무소, 감사반 또는 회계법인(유한회사)만이 회계 및 감사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 공인회계사 등록자가 아닌 인은 이러한 유형의 어떠한 법적실체에도 투자할 수 없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제되는 감사 서비스는 감사반 또는 회계법인에 속해 있는 한국 공인회계사만이 공급할 수 있다.

23. 분야

전문직 서비스 – 세무사

관련의무

시장접근(제8.5조)

현지주재(제8.6조)

조치

세무사법 제6조, 제13조, 제16조의3, 제20조 및 제20조의2(법률 제18521호, 2021. 11. 23.)

법인세법 제60조(법률 제20775호, 2025. 3. 14.)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3(대통령령 제35350호, 2025. 2. 28.)

소득세법 제70조(법률 제20615호, 2024. 12. 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3(대통령령 제35349호, 2025. 2. 28.)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31조(국세청훈령 제2655호, 2024. 12. 13.)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가 한국에 설립한 세무사무소, 세무조정반 또는 세무법인(유한회사)만이 세무조정 서비스 및 세무대리서비스를 포함한 세무사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 세무사 등록자가 아닌 인은 이러한 유형의 어떠한 법적 실체에도 투자할 수 없다.

세무조정반 또는 세무법인(유한회사)만이 세무조정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24. 분야

전문직 서비스 – 통관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8.5조)

현지주재(제8.6조)

조치

관세사법 제3조, 제7조, 제9조, 제12조, 제17조의2, 제17조의4, 제17조의8, 제17조의13, 제19조 및 제25조(법률 제20608호, 2024. 12. 31.)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관세사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관세사, 그러한 관세사에 의하여 설립된 관세사법인 또는 「관세사법」에 의하여 통관업 허가를 받은 통관취급법인만이 통관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통관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24. 분야 엔지니어링 및 그 밖의 기술 서비스 – 산업안전 · 보건기관 및 자문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8.6조)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8조, 제21조 및 제145조(법률 제19591호, 2023. 8. 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7조(대통령령 제35483호, 2025. 4. 2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229조(고용노동부령 제440호, 2025. 4. 29.)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 관리 또는 진단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 및 지도, 그리고 작업환경의 평가 및 개선 지도 등 산업안전 또는 위생 자문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25. 분야	엔지니어링 및 그 밖의 기술 서비스 – 건축서비스, 엔지니어링 서비스, 통합 엔지니어링 서비스, 도시계획 및 조경건축 서비스, 측량 및 지도제작 서비스(지적 측량 및 지적도 제작 서비스 미 포함)
관련의무	현지주재(제8.6조)
조치	<p>건축사법 제23조(대통령령 제18826호, 2022. 2. 3.)</p> <p>건축사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23조(대통령령 제32825호, 2022. 7. 26.)</p> <p>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3조(국토교통부령 제1390호, 2024. 9. 26.)</p> <p>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법률 제19990호, 2024. 1. 9.)</p> <p>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3조(대통령령 제34382호, 2024. 4. 2.)</p> <p>기술사법 제5조의7 및 제6조(법률 제18425호, 2021. 8. 17.)</p> <p>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법률 제20044호, 2024. 1. 16.)</p> <p>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대통령령 제35382호, 2025. 3. 12.)</p> <p>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국토교통부령 제1366호, 2024. 7. 16.)</p> <p>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법률 제19967호, 2024. 1. 9.)</p> <p>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대통령령 제34652호, 2024. 7. 2.)</p> <p>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국토교통부령 제1362호, 2024. 7. 10.)</p> <p>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법률 제18421호, 2021. 8. 17.)</p> <p>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제10조(법률 제19591호, 2023. 8. 8.)</p> <p>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3조(법률 제35228호,</p>

2025. 1. 2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법률 제20342호, 2024. 2. 2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제35조 및 제36조(대통령령 제35246호, 2025. 2. 7.)

온천법 제7조(법률 제19028호, 2022. 11. 15.)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법률 제20157호, 2024. 1. 30.)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건축 서비스, 엔지니어링 서비스, 통합 엔지니어링 서비스, 도시 계획 및 조경건축 서비스 또는 측량 및 지도제작 서비스(지적 측량 및 지적도 제작 서비스 미포함)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유보항목은 외국 건축사와 한국 건축사 자격자 간의 공동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6. 분야

사업서비스 – 전광판방송 서비스 및 옥외광고 서비스

관련의무

이행요건(제11.10조)

고위 경영진 및 이사회(제11.11조)

현지주재(제8.6조)

조치

방송법 제13조 및 제73조(법률 제20473호, 2024. 10. 2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법률 제19590호, 2023. 8. 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및 제44조(대통령령 제34600호, 2024. 6. 25.)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외국 국민 또는 외국기업의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유사한 최고선임임원)인 대한민국 국민은 전광판방송 서비스를 공급하는 회사의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유사한 최고선임임원) 또는 편성책임자가 될 수 없다.

전광판방송프로그램의 최소 20퍼센트는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제공한 비상업용 공익광고물로 편성되어야 한다.

옥외광고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실을 설치해야 한다.

28. 분야	사업서비스 – 직업알선서비스, 근로자 공급 및 근로자 파견서비스 및 선원교육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3조 및 제11.4조) 시장접근(제8.4조) 현지주재(제8.5조)
조치	직업안정법 제19조 및 제33조(법률 제20121호, 2024. 1. 23.)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3조(대통령령 제35172호, 2024. 12. 31.)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및 제36조(고용노동부령 제416호, 2024. 6. 1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및 제10조(법률 제17605호, 2020. 12. 8.)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대통령령 제30256호, 2019. 12. 24.)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및 제5조(고용노동부령 제416호, 2024. 6. 1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7조(법률 제20483호, 2024. 10. 22.) 선원법 제109조, 제110조, 제112조, 제115조, 제116조, 제117조, 제142조 및 제143조(법률 제20525호, 2024. 10. 22.) 해운법 제33조(법률 제20951호, 2025. 4. 22.) 해운법 시행규칙 제23조(해양수산부령 제652호, 2024. 2. 5.)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제5조(법률 제13272호, 2015. 3. 27.)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유료직업소개서비스, 근로자 공급서비스 또는 근로자 파견(임시파견)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실을 설치해야 한다.

투명성 목적상, 2020년 1월 16일 현재 근로자 파견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대통령령에 의하여 32개 사업으로 한정되나,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 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에 따라 파견대상 업무를 확대하고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지방해양수산청, 선원관리사업운영자, 「선원법」에 따라 규제를 받는 해양 및 수산업 관련 단체나 기관만이 선원인력공급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선원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은 한국 「상법」에 규정된 회사여야 하고, 「해운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만이 선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할 수 있다.

28. 분야

조사 및 경비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8.5조)

현지주재(제8.6조)

조치

경비업법 제3조 및 제4조(법률 제20645호, 2025. 1. 7.)

경비업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대통령령 제34826호, 2024. 8. 13.)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3조(행정안전부령 제512호, 2024. 10. 14.)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만이 한국 내에서 경비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투명성 목적상, 한국에서는 다음 5가지 종류의 경비 서비스만이 허용된다.

가. 시설경비

나. 호송경비

다. 신변보호

라. 기계경비, 그리고

마. 특수경비

29. 분야

간행물 관련 유통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3조)

조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8조, 제19조 및 제19조의3(법률 제20919호, 2025. 4. 8.)

출판문화사업 진흥법 시행령 제12조(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12. 6.)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문화체육관광부령 제397호, 2020. 6. 23.)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국내 배포를 목적으로 하는 간행물은 필요시 심의의 대상이 된다.

30. 분야

운송 서비스 - 항공기 유지 및 보수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8.6조)

조치

항공사업법 제42조(법률 제19688호, 2023. 8. 16.)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국토교통부령 제1342호, 2024. 6. 4.)
항공안전법 제97조(법률 제18789호, 2022. 1. 18.)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항공기 유지 및 보수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31. 분야

교육 서비스 – 고등교육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3조 및 제11.4조)

시장접근(제8.5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11조)

조치

고등교육법 제3조, 제4조, 제21조, 제23조, 제32조, 제42조 및

제43조(법률 제20466호, 2023. 6. 9.)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 및 제28조(대통령령 제33405호, 2023. 4. 18.)

사립학교법 제3조, 제5조, 제10조 및 제21조(법률 제35382호, 2025. 3. 12.)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3(대통령령 제34931호, 2024. 10. 8.)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법률 제18989호, 2022. 10. 18.)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및 제2조(대통령령 제34300호, 2024. 3. 1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제8조, 제9조 및 제18조(법률 제19430호, 2023. 6. 9.)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및 제24조(대통령령 제34567호, 2024. 7. 2.)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사립고등교육기관 이사정수의 50퍼센트 이상은 한국 국민이어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기관 기본재산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외국인이 출연한 경우, 그러한 교육기관의 이사정수의 3분의 2 미만까지 외국 국민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기본재산이란 부동산, 정관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되는 재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및 학교법인의 회계년도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을 말한다.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 학교법인만이 한국에서 고등 교육기관(부속서 II에 열거된 기관의 유형 제외)을 설립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은 의료인 · 약사 · 수의사 · 한약사 · 의료기사, 유아 · 초등 · 중등교원을 위한 고등교육 및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고등교육기관 분야의 연간 총 학생정원을 제한할 수 있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수도권 지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포함한다.

초등교원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은 한국 중앙정부 또는 지방 정부만이 설립할 수 있다. 방송을 통하여 대중에게 고등교육 서비스를 공급하는 고등교육기관은 중앙정부만이 설립할 수 있다.

기술대학 및 사내 대학을 제외하고, 고등교육기관 신설, 확장 또는 이전은 수도권 지역에서 제한될 수 있다.

대학(전문대학)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에서의 전문대학, 대학 및 산업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은 외국 공인 평가인정기구의 인정을 취득하거나, 해당 외국정부의 인정 또는 추천을 획득한 외국 대학으로 제한된다.

국내외 고등교육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은 그러한 인정된 학점이 졸업에 필요한 총 학점의 절반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인정된다.

32. 분야

교육 서비스 – 성인교육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3조 및 제11.4조)

시장접근(제8.5조)

조치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조의2 및 제13조(법률 제19347호, 2023. 4. 16.)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대통령령 제34492호, 2024. 5. 7.)

평생교육법 제30조 및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법률 제19588호, 2023. 8. 8.)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법률 제19438호, 2023. 6. 13.)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별표 1(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48호, 2024. 9. 19.)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에서 외국인이 설립할 수 있는 성인교육기관의 유형은 다음에 한정된다.

가. 평생 및 직업교육 관련 성인대상 학원, 그리고

나. 이 협정 발효일 이전에, 학력 인정 또는 학위 수여 목적 외의 성인평생교육시설로서

1) 사업장, 시민사회단체, 학교 및 언론기관에 부설된 교육시설

2) 지식 · 인력 개발 사업 관련 교육시설, 그리고

3) 온라인 평생교육시설이면서 성인 대상으로 설립된 것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성인대상 학원이란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10명 이상에게 평생 또는 직업교육 관련 과목에 관한 교습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성인대상 학원에 강사로 고용되는 외국 국민은 학사학위 이상 또는 동등 학력소지자로서 한국 내에 거주해야 한다.

수도권 지역에서 교육시설의 신설, 확장 또는 이전은 수도권 지역에서 제한될 수 있다.

투명성 목적상, 교육감은 비차별적으로 학원 수강료를 규율할 수 있다.

33. 분야

교육 서비스 – 직업능력개발 훈련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8.6조)

조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 제32조 및 제36조(법률 제19174호, 2023. 1.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26조(대통령령 제34472호, 2024. 4. 30.)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4조 및 제18조(고용노동부령 제416호, 2024. 6. 12.)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직업능력개발 훈련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34. 분야

수의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8.5조)

현지주재(제8.6조)

조치

수의사법 제4조, 제17조, 제22조의2, 제22조의4 및 제22조의5(법률 제20087호, 2024. 1. 23.)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5조(농림축산식품부령 제647호, 2024. 4. 25.)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2 및 제37조의12(법률 제19499호, 2023. 6. 20.)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의11(해양수산부령 제681호, 2024. 7. 4.)

민법 제32조(법률 제20432호, 2024. 9. 20.)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수의사법」 제17조(법률 제20087호, 2024. 1. 23.)에 따라 한국에 설립된 동물병원에 공식적으로 등록되고 수의사 면허를 소지한 인만이 수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12(법률 제19499호, 2023. 6. 20.)에 따라 한국에 설립된 수산생물질병검사센터에 공식적으로 등록되고 수산질병관리사 면허를 소지한 인만이 수산생물질병검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5. 분야 환경서비스 – 폐수처리 서비스, 폐기물관리 서비스, 대기오염처리 서비스, 환경오염방지시설 사업, 환경영향평가, 토양 및 지하수 정화 서비스 및 유독화학물질 관리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8.6조)

조치 물환경보전법 제62조(법률 제20116호, 2024. 1. 2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법률 제18469호, 2021. 9. 24.)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7(법률 제20120호, 2024. 1. 23.)
지하수법 제29조의2(법률 제20120호, 2024. 1. 23.)
대기환경보전법 제68조(법률 제20852호, 2025. 3. 25.)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법률 제20518호, 2024. 10. 22.)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법률 제20231호, 2024. 2. 6.)
폐기물관리법 제25조(법률 제20859호, 2025. 3. 25.)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대통령령 제35382호, 2025. 3. 12.)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분야란에 열거된 환경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36. 분야

공연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3조)

조치

공연법 제6조 및 제7조(법률 제35382호, 2025. 3. 12.)

공연법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대통령령 제33886호, 2023. 11. 21.)

공연법 시행규칙 제4조(문화체육관광부령 제597호, 2025. 4. 23.)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법무부령 제1086호, 2024. 12. 24.)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에서 공연하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한국 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고자 하는 인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37. 분야

생물학적 제제 제조

관련의무

이행요건(제11.10조)

조치

약사법 제42조(법률 제17208호, 2020. 4. 7.)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1조(총리령 제1985호, 2024. 10. 4.)

유보내용

투자

혈액제제를 제조하는 인은 한국의 혈액관리기구로부터 원료
혈액 물질을 조달해야 한다.

38. 분야

정기간행물의 발행(신문 제외)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3조 및 제11.4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11조)
시장접근(제8.5조)
현지주재(제8.6조)

조치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9조(법률 제19592호, 2023. 8. 8.)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12. 6.)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기업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은 한국의 국민이어야 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인은 한국에서 정기간행물을 발행할 수 없다.

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

나. 한국 국민이 아닌 인이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유사한 최고선임임원)로 되어 있는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또는

다. 외국인이 50퍼센트 이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외국인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지사 또는 지국을 한국 내에 설치할 수 있다. 그러한 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은 다른 쪽 당사국 영역 내에서 편집된 원어로 된 정기간행물에 한하여 한국 내에서 인쇄 및 배포할 수

있다.

39. 분야

유통 서비스 – 농축산업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3조 및 제11.4조)

시장접근(제8.5조)

조치

양곡관리법 제12조(법률 제18525호, 2021. 11. 30.)

축산법 제30조 및 제34조(법률 제20581호, 2024. 12. 20.)

종자산업법 제42조(법률 제19119호, 2022. 12. 27.)

사료관리법 제6조(법률 제19752호, 2023. 10. 24.)

인삼산업법 제20조(법률 제19490호, 2023. 6. 20.)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법률 제19438호, 2023. 6. 13.)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5조(대통령령 제34936호, 2024. 10. 8.)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별표 2(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48호, 2024. 9. 1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7조 및 제43조(법률 제20080호, 2024. 1. 23.)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추천 및 수입관리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4-91호, 2024. 12. 31., 산림청고시 제2024-91호, 2024. 12. 31.)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외국인은 육류도매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보유할 수 없다.

「농업협동조합법」상의 축산업협동조합만이 한국 내에서 가축 시장을 개설 및 관리할 수 있다.

지방정부만이 공영도매시장을 개설할 수 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생산자단체 또는 공익법인만이 공판장을 개설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8.3조(내국민 대우) 및 제8.5조(시장접근)는 한국이 세계무역기구 관세율할당의 운영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저해하지 않는다.

40. 분야	에너지산업 – 원자력발전을 제외한 발전, 송전, 배전 및 전력 판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4조) ³
조치	<p>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8조(법률 제20531호, 2024. 10. 22.)</p> <p>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7조(대통령령 35471호, 2025. 4. 22.)</p> <p>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 및 제5조(법률 제34936호, 2024. 10. 8.)</p> <p>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5조(대통령령 제34936호, 2024. 10. 8.)</p> <p>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별표1, 2(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48호, 2024. 9. 19)</p> <p>재정경제부 고시(제2000-17호, 2000. 9. 28.)</p> <p>금융투자업 규정 제6-2조(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8호, 2025. 3. 18)</p>
유보내용	<u>투자</u>
	<p>한국전력공사의 발행주식에 대하여 외국소유지분비율의 총합은 발행주식의 100분의 4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외국인은 한국전력 공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p> <p>지역난방용 열병합발전 설비를 포함한 발전설비에 대한 외국소유지분비율의 총합은 대한민국 영역내 전체 발전설비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p> <p>송전, 배전 및 전력 판매사업에 대한 외국소유지분비율의 총합</p>

³ 대한민국 부속서 II의 열한 번째 유보항목 제1항은 이 유보항목에 적용되지 않는다.

은 100분의 50 미만이어야 할 것이다. 외국인은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41. 분야

에너지산업 – 가스 산업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4조)⁴

조치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19조(법률 제17131호, 2020. 3. 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8호(법률 제20531호, 2024. 10. 2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 및 제5조(법률 제19438호, 2023. 6. 13.)

한국가스공사정관 제11조(2019. 7. 3.)

유보내용

외국인은 총합하여 한국가스공사 지분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⁴ 대한민국 부속서 II의 열한 번째 유보항목 제1항은 이 유보항목에 적용되지 않는다.

42. 분야

레크리에이션 · 문화 및 스포츠 서비스 – 영화상영 서비스

관련의무

이행요건(제11.10조)

시장접근(제8.5조)

조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7조 및 제40조
(법률 제20496호, 2024. 10. 2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대통령령
제35463호, 2025. 4. 22.)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 내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각 상영관에서 연간 73일 이상 한
국영화를 상영해야 한다.

43. 분야

뉴스제공(뉴스통신사)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3조 및 제11.4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11조)
시장접근(제8.5조)
현지주재(제8.6조)

조치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5, 제16조 및 제28조(법률 제19592호, 2023. 8. 8.)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10조(대통령령 제34767호, 2024. 7. 30.)
전파법 제20조(법률 제20481호, 2024. 10. 22.)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뉴스통신사는 연합뉴스사와 같이 무선국의 허가를 받은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뉴스통신사와의 계약 체결을 통한 방법으로만 한국에서 뉴스통신을 공급할 수 있다.

다음에 해당하는 인은 한국에서 뉴스통신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가. 외국정부

나. 외국인

다. 한국 국민이 아니거나 한국에 주소를 두지 않은
인이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유
사한 최고선임임원)로 되어 있는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또는

라. 외국인이 25퍼센트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다음에 해당하는 인은 뉴스통신사의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유사한 최고선임임원)나 편집인, 또는 연합뉴스사 또는 뉴스통신진흥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가. 외국 국민, 또는

나. 한국에 주소를 두지 않은 한국 국민

외국 뉴스통신사 지사 또는 지국의 한국 내 설립은 기사취재 목적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러한 지사 또는 지국은 한국 내에서 뉴스통신을 배포할 수 없다.

다음에 해당하는 인은 무선국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가. 외국 국민

나. 외국정부 또는 그 대표자, 또는

다.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